

재정통계 Statistics of Public Finance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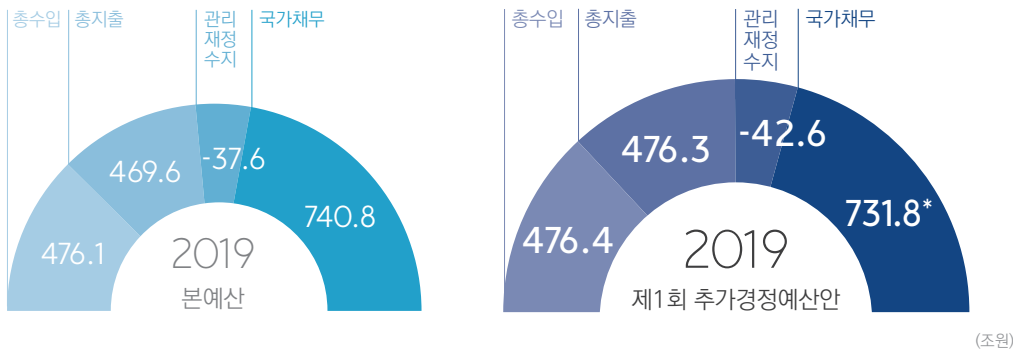
No 04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규모 Volume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총지출을 6.7조원 확대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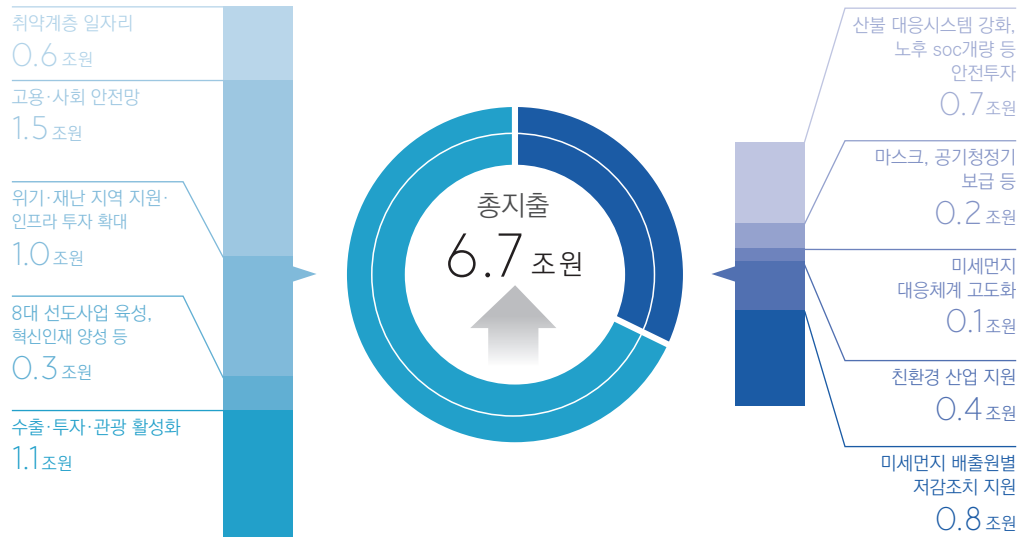


* 추경편성으로 인한 채무증가분(3.6조원)과 전년 실적 반영에 따른 감소분(-12.6조원) 등으로 731.8조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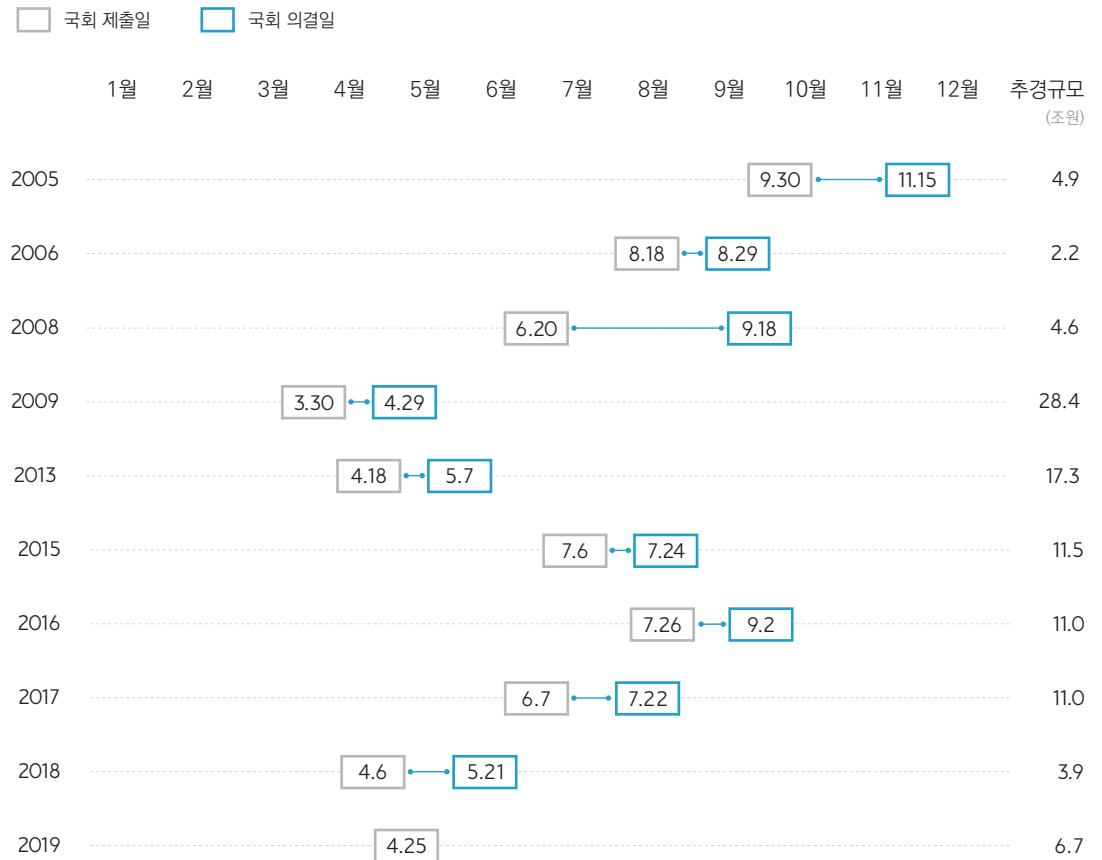
구성 Component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 67%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원 33%



연도별 추경 일정 Trends



2005년 이후 총 10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회 제출일부터 의결일까지 최장 90일, 최단 11일이 소요

※ 추경규모는 세출증가 및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재원규모를 의미
※2019년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대한민국 헌법 제5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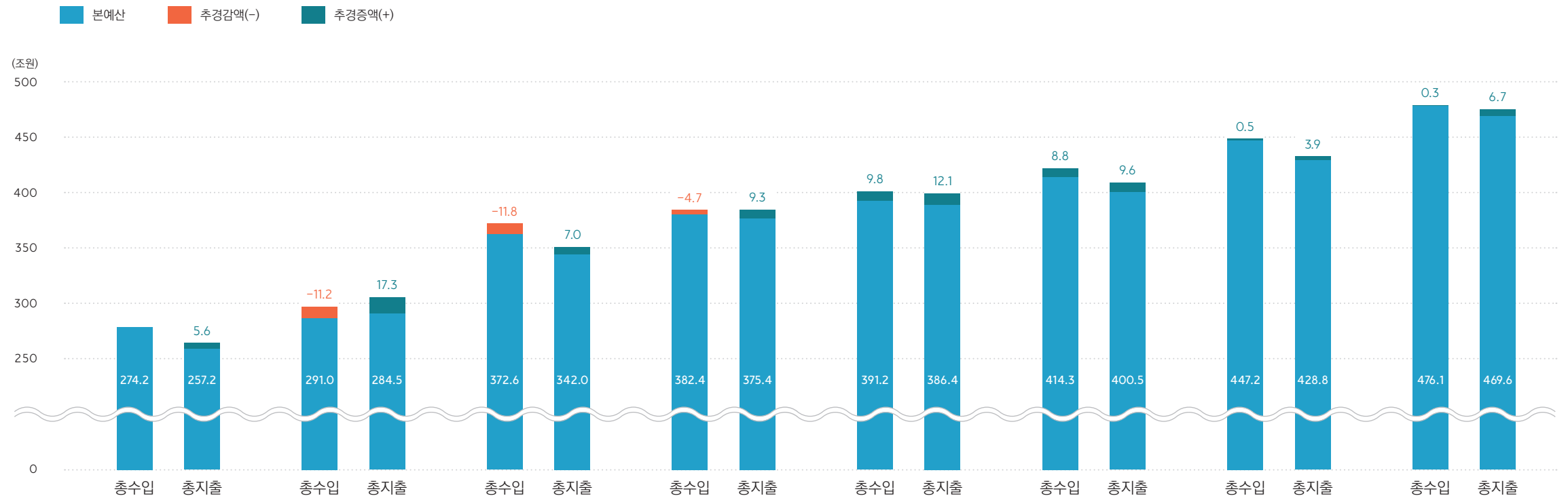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추이 Trends



※ 2019년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2008	2009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원	4.9 세계잉여금	2.1 세계잉여금 3.3 기금 여유자금 1.5 기금차입금 22.0 국채발행	0.3 세계잉여금 0.2 한은잉여금 0.7 기금 여유자금 0.3 세출감액 15.8 국채발행	0.7 한은잉여금 1.5 기금 여유자금 9.6 국채발행	1.2 세계잉여금 9.8 예상 세수증가분	1.1 세계잉여금 1.3 기금 여유자금 8.8 예상 세수증가분	2.0 세계잉여금 0.6 한은잉여금 1.3 기금 여유자금	0.1 세계잉여금 0.3 한은잉여금 2.7 기금 여유자금 3.6 국채발행
주요 내용	2.4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량 확충 1.4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 0.4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0.7 의무적 지출소요	-11.2 세입결손 4.2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5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4.5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3.0 지역경제 활성화 2.5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12.0 세입결손 3.0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1.3 일자리 및 민생안정 1.0 중소·수출기업 지원	-5.6 세입결손 2.5 메르스 극복지원 0.8 가뭄 및 장마 대책 1.2 서민생활 안정 1.7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3.7 지방재정 보강 2.3 지역경제 활성화 1.9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9 구조조정 지원 1.2 국가채무 상환	4.2 일자리 창출 1.2 일자리 여건개선 2.3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3.5 지방재정보강	2.9 청년일자리 대책 1.0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4.5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2.2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 재원, 주요내용은 각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참조